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19.10. 1.)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신규로 포함된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물이용부담금 면제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도 개선(안 제22조제4항, 별표 3 및 별표 4)

- 1)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현행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함
- 2)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반지원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II권역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하는 비율을 삭제함

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안 제33조의2)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에서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면제하되, 하천수 취수량 및 방류량이 동일하고, 방류수에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않도록 함

다. 오염총량과징금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37조의4)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재검토 대상이 아닌 오염총량과징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의 규제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징수비용의 교부)”를 “(징수비용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교부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을 “수립지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의2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2호) 가목 중 “하천수를 냉각수로”를 “하천수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냉각수로”를 “하천수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를 “제2호 또는 제3호의 하천수사용자가”로, “충족하는 경우”를 “갖춘 경우”로 한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하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

제3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수질개선”으로 한다.

9.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7조의4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3호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별표 2 제1호나목3)가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일초과오염배출량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셋째자리는 버린다)하고, 총인(T-P)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계산(넷째자리는 버린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비고 제3호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22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 2) 친환경농업 또는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유통 등을 위한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2) 의료, 보육 등 지역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사업
- 3)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성사업

- 1) 교육기자재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2) 장학지원을 위한 사업(대학생은 등록금 지원에 한정한다)
- 3)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 1) 오염물질 정화시설, 분류식 하수관로의 설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등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

1. 간접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2. 시설 등의 운영비용은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주거생활의 편의 도모, 공공요금 납부 등 가구별 생활지원을 위한 사업
3. 특별지원사업: 지역의 수질 개선,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u>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u> 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① ----- -----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u>징수비용의 교부</u>)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4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u>상당하는</u> 금액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u>교부하여야</u> 한다.	제17조(<u>징수비용의 지급</u>) ① ---- ----- ----- ----- ----- ----- -----해당하는 --- ----- ----- -- 지급해야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	② ----- 「환경정책기본법」----- -----

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시장·군수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주민지원
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
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
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
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배분한다.

⑤ (생략)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
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생략)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

지급해야 ----.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30퍼센트-----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

----- 위해 -----

--- 통보해야 -----.

1. (현행과 같음)

2. -----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② ~ ⑥ (생 략)

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
진 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
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
석·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
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
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을 면제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수립지침

②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
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

-----.

1. (현행과 같음)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
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
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하
천수를 수열에너지로 사용하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하천수를 냉각수로 사용한 후 취수량과 동일한 양의 물을 하천에 방류할 것 나. 냉각수로 사용한 후 하천으로 방류하는 물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새로 포함되지 아니할 것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 8. (생략) <u><신설></u> 9. 그 밖에 금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는 경우 4. 제2호 또는 제3호의 하천수 사용자가 --- 갖춘 경우 가. 하천수를 ----- ----- ----- 나. 하천수를 ----- ----- ----- ----- ----- <u>않을</u> ----- 제35조(기금의 용도) ----- ----- ----- -----. 1. ~ 8. (현행과 같음) 9.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u>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u> 10. ----- <u>수질개선</u>----- ----- -----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u>및 기준: 2014년 7월 29일</u> <u>4. 제38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u> <u>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u> <u>29일</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정책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7152